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
<개정 2021. 7. 12.> 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소유자 []변경 []정정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대지위치		지번		
도로명주소				
명칭		호명칭		

(변경 、 정정) 전			(변경 、 정정) 후			변동구분
성명(명칭)	주소	지분	성명(명칭)	주소	지분	변동일자
주민등록번호			주민등록번호			변동원인
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2항·제3항 제21조
[]변경
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을 신청합니다.
[]정정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: 없음 2.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나.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. 「공증인법」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,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